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0월 16일 이봉수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0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봉수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2)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부실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안 제4조)
 - 3)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는 주요 구조부 공사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 라. 구청장은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안 제7조)
- 마.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의 처리, 부실공사 측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지난 2014.9.20일부터 6개월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여러 분야에서 안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 관내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구청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이 부실공사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 “마포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마포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차단함은 물론 건전한 건설공사 확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가. 안 제1조~제3조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 나.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부실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는 주요 구조부 공사 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
 - 라. 안 제7조는 구청장은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신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 마. 안 제7조~제11조에서는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의 처리, 부실공사 측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하도록 함

- 동(同) 조례안은 2015.10.19.~10.23.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우리 구 건설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전자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 사전에 건전한 우량 건설공사 업체를 선별하기가 어렵고, 실제 낙찰 받은 공사업체가 시공능력 부족 등 사유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조례에서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마포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실방지공사 신고자와 건설공사 업체 모두에게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주게 하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마포구 관내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